

운영위원회 규정

제정 2016. 4. 1
경상북도 승인 2016. 4. 27
개정 2019. 2. 18

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 본회 규약 제38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, 운영위원회 (이하“위원회”이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위원회는 경북체육회 각종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과 이사회 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이사회의 위임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거나 능률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 후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한다.

1. 이사회 심의사항
2. 각종 기금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3. 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
4.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사항
5.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체육회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7. 체육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8. 자체 또는 중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9. 기타 주요사항

제4조(조직)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, 사무처장을 포함한 위원 11인 이내로 한다.

②위원장은 상임부회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이사중에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 이사회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.

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총무팀장을 간사로 한다.

제5조(회의)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단, 예·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장이 유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, 사무처장 순으로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제6조(기금관리위원회 역할) ①체육회 규약 제41·42·43·44·45조에 의거 본위원회가 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한다.

②기금과 관련된 운영규정은 『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규정』에 의한다.

제7조(사무처리) 본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본회 사무처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.

제8조(시행세칙) 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시행세칙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9조(경비지급) 본 위원회 소집시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2.18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